< 안양우편집중국 공고 제2025-22호 >

안양우편집중국 2025년 제6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

안양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5.

안양우편집중국장

1.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별 시험방법 상이

채용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 고
가형	A (19:00~23:00)	4	○ 우편물(통상,소포 등) 구분 및 기타 부대업무	채용분야 및 근무형태별 중복지원 불가
	B (22:00~익07:00)	1		
나형 (※ 실기시험 있음)	C (13:00~22:00)	3	○ 우편물 상 · 하차 보조 ○ 고중량 우편물 투낭 ○ 전동차 운전 ○ 우편물 구분 ○ 약 700kg 상당의 우편물 적재 파레트 이동작업 등	
	D (19:00~23:00)	3		
	E (18:00~22:00)	3		
	F (22:00~익07:00)	1		

※ 우편물 적재 파레트는 약700kg 상당이며 파레트 이동작업이 가능한 체력을 요구함

※ 근무 예정 부서(근무지역): 안양우편집중국(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기 근무형태 중 야간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자(별도안내)이며, 특수건강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시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용결격사유에 해당)

2. 근무 조건 [가형, 나형 공통]

○ 신분: 기간제 우정실무원(비공무원)

○ 근로계약기간: 2026.1.2.(예정) ~ 2026.4.30.까지

○ 보수(기본급+수당)

- 기본급: 시급 10,320원(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대: 22시~익06시)
- 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한),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기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해당자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1일 4시간
-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 휴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3. 응시 자격 및 요건 (가형, 나형 공통)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응시연령: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 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다.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형, 나형 공통〕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자

-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 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가형	서류전형	면접시험	–
나형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 제2차 실기시험과 제3차 면접시험은 같은 날 실시함

가형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제출된 서류 작성의 성실성 평가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요소: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나형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제출된 서류 작성의 성실성 평가

나. 제2차 시험: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검정
  - 체력 검정(3종목):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우편물적재 파레트 이동
  - 적재 파레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이동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후 실기시험 진행
  - 실기시험 소요 시간: 각 종목당 1분
  - 체력검사 기준표: [붙임1] 참조
  - 각 종목 실시 후 즉석에서 합격/불합격 확인, 불합격자 퇴실안내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절차 수행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6. 응시서류 접수 (가형, 나형 공통)

가. 원서교부: 안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표준응시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게시된 양식을 출력 사용

나. 공고기간: 2025.12.15.(월) ~ 12.22.(월) 7일간

다. 접수기간: 2025.12.18.(목) ~ 12.22.(월) 17시까지, 3일간

※ 방문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까지(11:30 ~ 13:00 방문접수불가)

※ 접수기간 이전 또는 이후 접수분은 지원 불인정

라. 접수처: 안양우편집중국 2층 총괄계(031-389-9316)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안양우편집중국. 우) 14067

(전자우편 접수시) tax40007680@korea.kr

마. 접수방법: E-mail,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모든 접수분은 2025.12.22.(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tax40007680@korea.kr
- E-mail 접수분은 접수기간 동안 매일 1회(17시) 확인 후 응시자에게 접수 사항 문자 안내

※ E-mail 접수시 응시서류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접수기간 동안 매일 1회(17시 이후) 응시자에게 접수 사항 문자 안내

※ 우편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 안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비공무원 채용담당 앞 (우 14067)

-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글자표기
-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응시원서의 분실 등 서류 미접수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부서의 접수 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 확인

7.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채용분야	근무형태	담당업무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비고
가형	A (19:00~23:00)	○ 우편물(통상,소포등) 구분 및 기타 부대업무	가, 나, 다 라, 마, 바	아, 자, 차 (해당자 한 추가제출)	채용분야 및 근무형태별 중복지원 불가
	B (22:00~익07:00)				
나형 (※ 실기시험 있음)	C (13:00~22:00)	○ 우편물 상·하차 보조 ○ 고중량 우편물 투낭 ○ 전동차 운전 ○ 우편물 구분 ○ 약 700kg 상당의 우편물 적재 파레트 이동작업 등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해당자 한 추가제출)	
	D (19:00~23:00)				
	E (18:00~22:00)				
	F (22:00~익07:00)				

○ 제출서류(양식) 목록

가. 응시원서 1부 [붙임2] ※ 이력서에 지원근무형태, 메일주소, 본인서명 반드시 기재

나. 이력서 1부 [붙임3]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4]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마.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6]

바.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7]

사. 체력검정 응시 동의서약서 1부 [붙임8]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9]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형, 나형 공통)

가. 모집공고: 2025.12.15.(월) ~ 12.22.(월), 7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5.12.18.(목) ~ 12.22.(월) 17시까지, 3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2.24.(수)

※ 안양우편집중국 기관홈페이지 공고

라. 실기 및 면접시험: 2025.12.26.(금)

※ 안양우편집중국 기관홈페이지 공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5.12.29.(월)

※ 안양우편집중국 기관홈페이지 공고

9. 합격자 결정방법 (가형, 나형 공통)

가. 적격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라.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추가합격: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결격사유, 계약해지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면접시험 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연락하여 근무 가능 여부 확인)

10. 기타사항 (가형, 나형 공통)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2025.12.18.(목) ~ 12.22.(월) 17시까지, 3일간) 엄수 바랍니다.**

나. 본 시험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안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reapost.go.kr/gi/431c**)

다. **서류전형 및 실기,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초과되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 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야간근로자의 경우 합격 후,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에서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안양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우편집중국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안양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사.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시간외 근로) ①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맞는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카. 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한 경우 예비합격자 차순위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총괄계(031-389-9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력검사 기준표

종목/방법	합격	불합격
윗몸 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남 25개 이상	남 24개 이하
	여 20개 이상	여 19개 이하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1분)	남 20개 이상	남 19개 이하
	여 10개 이상	여 9개 이하
우편물 적재 파레트* (500kg 상당) 이동하기 (기준시간: 1분 30m 이동)	1분 이내 파레트 전체가 도착선 안에 도착함	1분 이내 파레트 전체가 도착선 안에 도착하지 못함

* 우편물 적재 파레트는 체력검사 시 응시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량조정 (700kg → 500kg)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윗몸 일으키기	- 실기위원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 껴잡는다. - 실기위원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매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 깍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 실기위원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양발을 모아 붙인 자세에서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실기위원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꿈치를 90도 이상 굽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적재 파레트 이동하기	- 실기위원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파레트 앞에 선다. - 실기위원의 “시작” 구령과 함께 우편물 적재된 파레트를 30m 이동시킨다. (출발선과 도착선의 거리는 일직선 30m가 되도록 설정한다.) - 1분 이내에 파레트 전체가 도착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 파레트가 구분선을 넘을 경우 불합격

※ 실기시험 실시 중 안전요원 입회

※ 안전요원은 실기시험 실시 전에 지원자 대상으로 적재 파레트 이동방법 및 안전교육실시

※ 응시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